



학교폭력 및 청소년상담 위기개입 매뉴얼

이영선 · 김경민 · 김래선 · 박양민 · 서선아 · 유춘자 · 이현숙 · 전소연 · 조은희 · 차진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학교폭력 및 청소년상담 위기개입 매뉴얼

인 쇄 : 2012년 12월

발 행 : 2012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신당6동 292-61)

T. (02)2250-3061 / F. (02)2250-301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기획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학교폭력 및 청소년상담 위기개입 매뉴얼

제1장 서론

I.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1
II.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1
III. 긴급구조 및 위기개입의 정의	2

제2장 호소문제 유형별 가이드라인

I. 학교폭력	3
II. 사이버 폭력	14
III. 가정폭력	25
IV. 자살	37
V. 성문제(성폭력, 임신)	47
VI. 가출	58

제1장 서론

I.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을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상담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 위기개입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개입 매뉴얼은 기존에 제작된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SNS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보다 간결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작되는 매뉴얼은 기존에 있던 위기개입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청소년 상담 실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I.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본 매뉴얼은 ‘청소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긴급구조 및 위기개입의 정의

1. 상담에서의 긴급구조 및 위기에 대한 용어 정의

- 긴급 또는 위급 : 위험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구조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위험도가 매우 높고 시각을 다투는 상황으로서, 예를 들어 가출 후 갈 곳이 없는 경우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위기(At-risk) :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Jeffries etc, 2004)을 말한다. 즉, 위기청소년(At-risk youth)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없으면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요소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위기라고 볼 수 있다.
- 위기개입 상담 :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즉시 개입하는 긴급구조 활동을 통하여 일차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지속적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차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출처 : 2006,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p16, 재인용>

2. 위기수준의 구분

본 매뉴얼에서 ‘위기’ 수준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개입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 기준별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위험(발생된 위기) : 현재 긴급구조나 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중위험(임박한 위기) :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 위기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저위험(위기 호소) : 위기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나 위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으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경우

제2장 호소문제 유형별 가이드라인

1. 학교폭력

1. 위기수준 판단기준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짐.

위기수준	개입 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현재 또는 지속적인 학교폭력경험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 시도하기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부모님이나 상담선생님께 알리기(내담자가 알리기 어려워하는 경우, 실무자가 대신 알려줄 수도 있음.) · 위기유형별 대처방법 안내(p8 참고) · 필요 시 긴급출동하기 및 경호지원 안내(117센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연계(경호지원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여 연계) · 신고 희망 시 117센터 연계 · 추수상담을 통한 확인(전화나 문자 등)
중위험 (임박한 위기)	학교폭력 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 시도하기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위기유형 별 예방 및 대처방법 안내(p8 참고) · 신고 희망 시 117센터 연계 · 상담 및 치료 희망 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채팅상담 연계, 1388청소년전화 안내 · 추수상담을 통한 확인(전화, 문자 등)

위기수준	개입 기준	개입 방법
저위험 (위기호소)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민, 괴로움 등을 호소하나 정보 의 제약으로 상황판단이 애 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학교폭력 대응 방법 안내 · 이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안내 · 추수상담 하기(문자, 전화 등을 통한 안내 등)

2.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

1) 학교 폭력 피해자

- ① 내담자의 인적사항(나이, 연락처, 거주지) 및 보호자의 연락처 확보
- ②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요? (위기, 일회성, 지속적 상담사례인지 파악)
- ③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④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피해 및 가해자 신원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 ⑤ 지금 다친 곳이 있나요? (병원 치료 및 입원 필요 여부)
- ⑥ 피해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나요? (증인,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 ⑦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부모 및 교사에게 알렸는지 여부)
- ⑧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엇이 걱정되나요?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염려되는 것)
- ⑨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있나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단계별	핵심사항	
1단계	사례파악, 위험/보호요인 파악	
2단계	상담의 동기화 및 상담 구조화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p>위험 평가에 따른 개입 필요</p> <p>① 가벼운 정도의 놀람, 주관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5~10회 정도의 단기 상담을 실시</p> <p>②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병원 등 외부 연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충분히 지지해 주면서 초기 라포 형성 후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세우고 접근함</p>
3단계	개입	
	아동·청소년 대상	내담자의 심리적 불안 및 정신안정, 체계적 이완훈련을 통한 불안 극복 훈련, 피해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 탐색
	부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경험에 따른 아이의 심리적 상태 이해 및 상호작용 훈련 - 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 - 아이 심리 상태 이해와 정서 조절하는 법 - 중재 대처 방법에 대한 지원 및 교육 - 대안적 탐색(문제 상황 종결 이후 학교 및 일상생활 복귀와 진로 행동에 대한 대안 탐색) - 학교 폭력 경험으로 인한 정신증적 문제 해결 및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4단계	상담평가, 종결 준비 및 종결	

2) 학교 폭력 가해자

- ① 내담자의 인적사항(나이, 연락처, 거주지) 및 보호자의 연락처 확보
- ②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③ 어떤 경우 폭력의 충동을 느끼나요?
- ④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 ⑤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 ⑥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부모 및 교사에게 알렸는지 여부)

⑦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엇이 걱정되나요?

(가해사실을 알렸을 때 염려되는 것)

⑧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단계별	핵심사항	
1단계	사례파악, 위험/보호요인 파악	
2단계	상담의 동기화 및 상담 구조화 실시	
	아동· 청소년 대상	위험 평가에 따른 개입 필요 ① 품행장애가 아니고 정도가 경미하면 분노 조절 등 문제 행동에 대한 직접 개입을 단기로 실시함 ② 비행도가 높고, 품행장애로 판단되면 이에 따른 개입전략을 세워 서 접근해야 함
3단계	개입	
	아동· 청소년 대상	- 사회적 기술,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조망 획득, 충동통제능력 증진, 분노조절, 행동기술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의사소통훈련, 갈등관리훈련, 문제해결 훈련, 학업 성취에 목표를 두고 개입
	부모 대상	- 주원인이 가족 내 갈등일 경우 부모 상담을 권고 하고, 부모님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움 -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 정서조절 훈련 교육
4단계	상담평가, 종결 준비 및 종결	

3) 정보제공 시 안내할 정보

○ 경찰청 117

1)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117(www.safe182.go.kr)

- 국번없이 117
- 문자신고: #0117(요금무료)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 ① 안전Dream(또는 검색어 117)로 접속
 - ② 인터넷 1:1 채팅, 신고가능
 - ③ 신고내용 작성

2) 모바일 웹/앱 신고

- ① m.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실행
- ② 모바일 앱 <학교여성폭력신고>메뉴 클릭,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117 지원내용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 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www.jikim.net)

- 전화 : 1588-9128
- 위기지원(현장출동) : 070-7165-1071, 070-7165-1079

※ 위기개입 시,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와 연결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상담내용 공유 및 상황파악, 필요시 담임과 연결 등 협조체계구축).

예) 상담교사를 통해 아이 상황 및 진위 여부 등 파악 → 필요한 경우, 담임과 협조하여 필요한 도움 제공한다.

3. 위기 유형별 세부 대처방법

1) 신체폭행

- ①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지
- ②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등의 또 다른 폭력이나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시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③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전달할 경우 →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 ④ 계속해서 보복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경호지원을 요청(117센터)할 수 있다.
- ⑤ 경찰 신고 시
→ 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의 중재는 불가능해지며,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안내, 가해자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2) 금품갈취

- ① 정확한 피해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누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신체적인 폭행 등의 피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부모님 및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 ③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선배일 경우 :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전체의 예방교육과 주변의 순찰 등을 진행되도록 요청한다.
- ④ 경찰에 신고 시 : 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하고 재발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3) 집단따돌림, 괴롭힘

- ① 공감과 지지, 따돌림의 정황 및 이유, 피해기간, 피해자 개인적인 특성,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② 만일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상황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전문 상담(치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초기대응이 중요 : 학급 담임의 중재와 대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④ 경찰에 신고할 경우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 만들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 낙서메모지, 일기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폭력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위기 개입 사례

1)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상담자1 : 안녕하세요! 000님

내담자1 : 네

상담자2 :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내담자2 : 선배들이 계속 돈을 모으라고 시키네요..

상담자3 : 어떤 선배들인지..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해줄래요? (정확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

내담자3 : 선배들은 올해 고1올라가는 선배인데요.. 옆 중 선배지만 같은 동네에 위치해서 자주만나기도 하구요 핸드폰으로 하루에 5통 이상 연락이 와요.. 안 받으면 욕 먹고 맞기까지 해요.. 그리고 10분 안에 오라했는데 1분이라도 늦거나 그럼 1분당 한대예요. 전에는 개념 없다고 10명이 넘는 선배들한테 100대 이상 맞은 적도 있어요 ㅠㅠ

상담자4 : 선배들이 돈을 모으라고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군요..

내담자4 : 자주 돈을 모으라고 해요 저의 남자애들이 10명되는데 보통 5만원이나 20만원 까지 모으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나눠서 한 명당 2만원씩 내구요 안 낸 사람은 맞아요 ㅠㅠ

상담자5 : 저런.. ㅠㅠ 계속 돈을 모으라고 하고 안 모으면 때리기 까지 하다니.. ***님이 너무 무섭고 힘들겠어요..

내담자5 : 무서워서 욕도 못하겠고 엄마 아빠 한테 말해도 뭐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고..

상담자6 : 이런 상황에서 **님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님께 꼭 상황을 알려서 부모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부모님 및 학교의 선생님께 이야기 하도록 적극적 권유 및 알리기 어려워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알리기 어려운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함.)

내담자6 : 부모님이 알면 마음아파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보복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상담자7 :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선배고 한 두명도 아니고, 계속 연락해서 돈모으라고 시키고 그럴 건데.. 가만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한 금품갈취이고 피해가 증명될 수 있다면 형사입건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담자7 :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 꺼내겠고..

상담자8 : **님이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선생님이 직접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복이 두렵다면, 117센터를 통해 경호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대신 전화 통화 및 117을 통한 경호지원 요청가능함 알림)**

내담자8 : 저..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담자9 : 부모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겠어요?

내담자9 : 네..010-1234-5676

상담자10 : 고마워요. 그리고 **님이 이때까지 겪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들을 지우지 말고 꼭 저장해 두도록 해요. **(증거자료 확보)**

※추후개입 : 경찰신고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때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모으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진술서를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함.

5.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3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형사법 적용
- 「소년법」, 「민법」 등

2) ‘학교폭력’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main.html> → 현행 법령 검색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법률 제 17조〉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 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법률 제 16조〉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 참고문헌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2009)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II. 사이버 폭력

1. 위기수준 판단 기준

위기수준	개입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매체나 휴대전화를 통한 대화와 만남으로 인해 현재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등에 노출되어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매체나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 또는 내담자의 정보가 담긴 음란물 유포 등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통화·채팅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안전확보 및 상황파악(내담자 연락처 확보) - 보호자, 교사, 경찰 등 지지체계 탐색 · 내담자가 직접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돕기 · 내담자가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상담자가 보호자에게 내담자의 상황 전달 - 증거자료수집 안내(저장, 캡처, 녹음 등) - 182, 117등에 보호자 또는 내담자가 실행할 수 있는 신고절차와 법률정보 안내 - 내담자가 신고할 여력이 없고 보호체계가 없는 경우, 내담자가 갑자기 채팅상담에서 나가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상담자가 직접 신고
중·저위험 (임박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의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사이버매체나 휴대전화를 통해 겪는 대인관계 문제로 불안하고 우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통화·채팅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안전확보 및 상황파악(내담자 연락처 확보) - 증거자료수집 안내(저장, 캡처, 녹음 등) - 182, 117등에 보호자 또는 내담자가 실행할 수 있는 신고절차와 법률정보 안내 - 내담자가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p15 ~ p17 참고)

※ 사이버폭력의 경우 매체의 특성 상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저위험 수준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사이버폭력 사례 상담진행 시 단계별 고려사항

○ 상담초기

- 사이버폭력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의 위기 수준인지 평가한다.
- 현재도 사이버폭력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한다.
- 단기상담으로 정보제공만 할 것인지, 장기상담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 부모·교사와 함께 이야기한다.

○ 상담중기

-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한다.
-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지지하고 공감한다.
- 사이버 폭력 문제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신고를 하고 싶은지 내담자 의사를 확인한다.
-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기관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한다.

○ 상담종결

- 향후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사항에 대해서 알린다.

2) 사이버폭력에 대해 부모 및 학교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

○ 혹시 우리 자녀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 갑자기 컴퓨터 이용을 중단했는가?
-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하는가?
- 당신 앞에서 친구의 핸드폰 응답을 피하는가?
- 학교활동 또는 일반적인 외부활동에 불안함을 보이는가?
- 컴퓨터 이용 후에 화내거나, 우울해 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 자신이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가?
- 일반적인 친구와 가족구성원들을 비정상적으로 회피하는가?
-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의 대처방법

- 자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증거를 수집한다.

- 학교에 연락을 취한다.
- 가해자의 부모와 연락을 취한다.
-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와 연락한다.
- 신체폭력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
- 혹시 우리 자녀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 당신이 자녀에게 다가갔을 때 재빨리 화면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닫는가?
 - 밤새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 만약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특별히 화를 내는가?
 - 다양한 온라인 계정 또는 하나의 계정이 아이의 것이 아닌가?
 - 컴퓨터를 이용하는 동안에 과도하게 웃는가?
 - 아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피하거나 방어적이 되는가?
- 자녀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일 경우에 부모의 대처방법
 - 폭력이 얼마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합리적으로 대처한다.
 - 비도덕적인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 PC에 자녀보호프로그램 설치를 고려한다.
 - 컴퓨터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한다.
 - 이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 사이버 폭력 사건을 발견했을 때 학교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 사건을 잘 파악한다.
 -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피해자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애정을 준다.
 - 필요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분리시킨다.
 - 증거를 확보한다.
 - 부모에게 연락한다.
 - 인터넷 회사와 연락한다.
 - 만약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경우 경찰과 연락한다.
 - 징계처분을 시행한다.
 - 만약 심각한 징계처분을 고려한다면 법률상담소와 연계한다.

- 사이버 폭력을 당할 때 취해야 할 행동
 - 대수롭지 않은 놀림은 무시한다.
 -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차단한다.
 - 폭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 괴롭힘에 대해 기록한다.
 - 폭력의 모든 증거를 남긴다.
 - 믿을 만한 성인에게 이야기한다.

3. 위기 유형별 세부 대처방법

1)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범죄 유형별 상담자 개입

○ 사이버스토킹

구분	내 용
의미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헐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
상담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이나 헐박 내용의 메일을 받고 있나요? -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욕을 하는 등의 피해를 주나요? - 증거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 피해를 신고하고 싶나요?

○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구분	내 용
의미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의미함
상담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헐박 메일을 받고 있나요? - 자신의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었나요? -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욕을 하는 등의 피해를 주나요? - 증거자료를 모아두었나요? - 피해를 신고하고 싶나요?

○ 개인정보침해

구분	내 용
의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상담자 개입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나요? - 내담자의 이메일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되었나요? -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왔나요? - 피해를 신고하고 싶나요?

○ 인터넷사기

구분	내 용
의미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등의 문제
상담자 개입	-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나요? -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나요? - 피해를 신고하고 싶나요?

2) 사이버폭력 피해자 신고절차

① 인터넷 신고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ctrc.go.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신고내용 작성

② 전화신고

-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
 - ※ 112의 경우 경찰이 긴급출동해야 하는 경우 주로 처리함
- ⇒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거주지의 관할경찰서로 이첩되어 거주지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③ 청소년 내담자를 위한 추가정보

Q1. 남자랑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여자경찰관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A1. 최근 모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 또는 확대되어 여성경찰관 배치되어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 신고 시 ‘여성경찰관을 통한 조사 및 수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Q2. 신고했다고 상대방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경찰 및 학교 등을 통한 신속한 신고·대응만이 사이버상에서의 동영상 유포 등의 보복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괜히 신고했다가 저도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요.

A3.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기 보다는 계도와 선도의 대상으로, 형법, 소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일시적인 판단착오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협박이나 폭력에 의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4. 고소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혼자서 고소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미성년자의 주장이 다르거나 가해자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인터넷 상에 가해자가 동영상 유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5.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한 자는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상에 자료가 유포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2조제1항에 따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기 개입 사례

1)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내담자1 : 제가 채팅에서 어떤 아저씨랑 만났는데요, 그 아저씨가 자기 성기사진 보내줄테니 제 얼굴이랑 몸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처음에 호기심에 보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동영상 찍어 보내라고 하는거예요.ㅠㅠ 첨에는 무서워서 동영상 보냈는데 계속해서 변태같이 굴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구..정말 죽고싶어요ㅠㅠ 저 어떡해요?

상담자1 : 상대방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계속 요구하니 내담자님이 정말 난감하고 무섭겠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었을테니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텐데, 잘 찾아왔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 **(사이버폭력의 위기수준과 진행상황 파악)**

내담자2 : 네...한 3주 된 것 같아요.ㅠㅠ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동영상 정말 유포하면 어떡해요?

상담자2 : 지금 상대방이 내담자님에게 하는건 협박이고 사이버 폭력이에요. 당연히 신고 가능하죠. 우선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내담자님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이 보낸 문자나 채팅내역 같은 거 저장해 두고 있나요? **(사이버폭력의 위기수준과 진행상황 파악, 신고의사 확인)**

내담자3 : 채팅은 없구요, 문자는 아직 핸드폰에 있어요. 누가 볼까봐 지우려고 했는데...

상담자3 : 그랬군요. 누가 볼까봐 걱정스럽기도 했겠네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문자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캡처도 해 놓고, 저장도 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 상대방 나이나 연락처도 알고 있는건가요? **(증거자료수집 안내)**

내담자4 : 네.. 나이는 31살이라고 했고 연락처는 문자 주고받은 번호 있어요. 채팅내역은 없는데..

상담자4 : 그래요, 내담자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더 있군요. 선생님이 내담자님이 어떻게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전화로 문의해서 좀 알아봐 줄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겠어요? 내담자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내담자님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려고요. **(내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가까운 182에 문의)**

내담자5 : 00시 00분 00동이요. 근데 신고하면 저도 걸리는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가 그러던데...부모님이 아시는 것도 무섭구...

상담자5 : 그렇죠..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줘요.

내담자6 : 네..ㅠㅠ

상담자6 : (잠시 후) 내담자님. 문의해보니 상대방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며 계속 동영상을 요청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해요. 그리고 동영상을 포털에 올리게 되면 음란물 유포죄도 성립되고요. 신고하는 건 내담자님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담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을거예요. **(신고절차 및 법률정보 제공)**

내담자7 : 아.. 그래요? 저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거죠?

상담자7 : 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내담자님 혼자서 감당하는게 힘들수도 있어 좀 걱정스러워요. 경찰서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고소장도 쓰고 조사 받는 것이 더 수월할 거라고 하고요...내담자님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님 중 어느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내담자8 : 엄마.... 근데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는 무서운데..화도 내실거구, 저한테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ㅠㅠ

상담자8 : 맞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당황하셔서 혼내실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내담자님 편에서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방금 엄마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말씀드려보겠어요? 내담자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걱정되면, 선생님이 말씀드려줄 수도 있어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내담자9 : 음... 그럼 제가 먼저 알아본 다음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 볼게요. 선생님이 전화하면 엄마가 더 놀랄 것 같아서...

상담자9 : 그래요, 내담자님. 우선은 확실하게 현재 상황을 알아야 경찰에서도 어느 담당자가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할 수 있으니, 내담자님이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원하면 여자경찰관이 내담자님과 얘기할 수 있고요. **(신고절차 정보제공)**

내담자10 : 네! 그러면 제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상담자10 : 방금 문의한 곳이 000-000-0000번이에요. XXX경위님을 찾으시면 되고요. 내담자님이 지금 전화 해 볼 수 있겠어요? **(신고절차 정보제공)**

내담자11 : 음...네...일단 전화로 물어볼게요.

상담자11 : 그래요. 일단 해 보고, 힘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지금 프로필 상에 있는 휴대전화번호가 내담자님 번호가 맞나요?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차 내일 전화 걸게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내담자님이 계속 동영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거니까요! **(내담자 연락처 확보, 추가도움에 대한 안내, 현재 위기행동 중단할 수 있도록 행동방향제시)**

내담자12 : 네, 전화번호 맞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근데 동영상 퍼뜨릴까봐 계속 걱정이..ㅠㅠ

상담자12 : **(내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행)**

- 매체의 특성상 동영상 유포에 대한 내담자의 불안에 공감
-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상담하면서 향후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사항에 대해 알림
- 채팅에 지속적으로 들어와 문제 해결에 도움 받도록 안내

2) 전화상담 위기개입 사례

[상담내용]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사진을 많은 친구들이 다 보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요. 학교갈 수가 없어요.

[개입내용]

- ① 내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스러움,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고 지지해 준다.
- ②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을 한다.
- ③ 부모님이나 담임교사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릴만한 사람을 찾는다.
- ④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 사진을 캡처하는 등 증거내용을 수집하도록 알려준다.
- 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신고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한다.
- ⑥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준다.

5.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1)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규 정	처 별	비 고
제74조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안·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제1항제3호는 반의사불벌죄, 기본적으로 형법 제283조 협박에도 해당
제73조3호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3호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규 정	처 별	비 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제71조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인정보침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규 정	처 별
제71조제1호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1조제5호 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및 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71조제8호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인터넷사기 : 「형법」

규 정	처 별	비 고
제347조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아이템 판매사기도 포함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참고문헌

- 사이버폭력(2012). 조아미, 박선영, 한영희, 이진숙, 김범구, 진영선, 이정민, 이원희, 정민사

Ⅲ. 가정폭력

1. 위기수준 판단 기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결 강요 등이 이에 속한다.

위기수준	개입 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현재 급박하게 제기되는 문제(폭행)로 인해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시도하기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필요시 부모에게 연락 시도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등에 연계 - 경찰, 소방서 연락 및 경찰 긴급출동하기 - 위기개입 및 상담을 위한 지역 상담복지센터 연계
중위험 (임박한 위기)	과거 경험에 의해 위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 (과거 가정폭력 경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시도하기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 위기개입 및 상담을 위한 지역 상담복지센터 연계 - 지속적인 채팅상담 연계 및 1388청소년전화 안내
저위험 (위기호소)	가정폭력 호소 문제를 통해 위기를 호소하나, 위기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낮으며 관심이나 지지를 원함. 상담을 통해 당면문제에 개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위기 완화 시키기 - 상담 필요시 지역 상담복지센터 연계 - 게시판, 채팅상담을 통한 지지와 공감 및 당면 문제 개입

2.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보호자의 연락처 확보
-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인가?
- 누구에게 폭력을 당했는가?
- 학대의 유형(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은 무엇인가?
- 어떤 상황에서 가정 폭력이 생겼나?
- 학대를 언제부터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 왔나?
- 학대받은 증거나 현장조사가 가능한 상황인가?
- 신고를 원하는가?
-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
- 학대하는 사람이 병력을 가지고 있나?
-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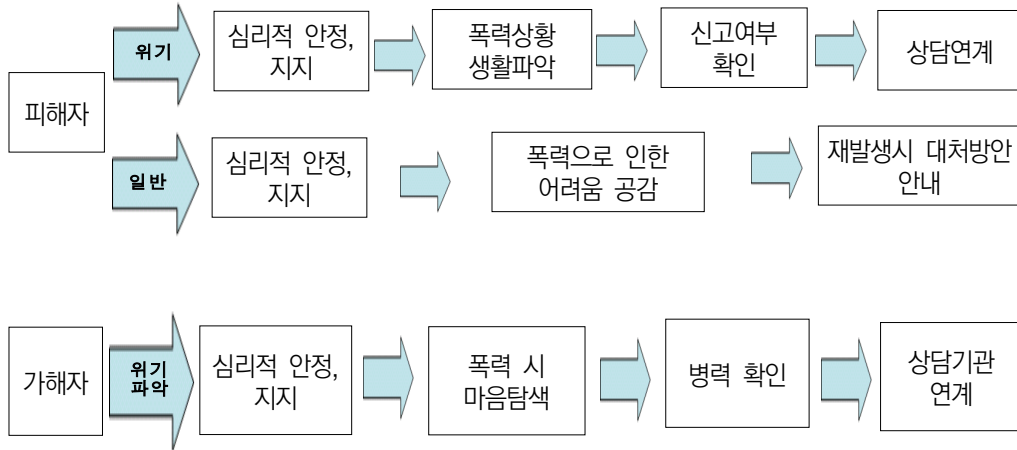
2)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언제 느끼는가?
-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자주 있었나?
- 학대를 할 때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 평소 스트레스가 있나?
-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 알콜, 약물을 남용하지 않나?

3) 주의해야 할 사항

- 미리 판단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다.
- 내담자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가능성을 찾는다.
- 내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다.

4) 가정폭력 상담과정



5) 증거자료 확보 (가정폭력 대처법)

- ① 폭력을 당할 때는 무조건 현장을 피하라. 믿을 만한 친구나 친지,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 ② 폭행을 당한 흔적은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긴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증인 확보를 해둔다.
- ③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 경찰(국번없이 112)에 신고한다.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믿을 만한 이웃집에서 대신 신고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신호를 만들어 둔다.

※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심리적 사정 실시

- * 폭력의 직접적, 간접적 증상을 알아본다.
 - 구타 정도는 어떠한가? 구타로 인한 치료경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 * 신경과 치료경험(신경안정제복용), 자살기도경험, 대인기피증세가 있는가?
- * 경찰에 신고한 적 있는가?
- * 과거의 구타 사실 및 가족 스트레스 원인, 폭력주기, 가족의 배경, 성장과정, 집안의 폭력내력을 파악한다.

3. 위기 유형 및 가정폭력에 대한 궁금증 Q & A

1) 청소년 가정폭력의 유형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 가정 내 청소년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유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가하는 것, 자녀에게 폭행당한 부모는 폭력발생 자체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며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 형제간 폭력 : 가정 내에서 형제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2) 가정폭력 Q & A

Q1. 아버지의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고소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A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는 금지됩니다. 이는 가정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예외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로부터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가정폭력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의 통보

Q3.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엄마와 외갓집에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외갓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3.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⑤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가정폭력을 피해 급하게 집을 나왔지만, 아이들과 머물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4.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초기 입주금 70만원 이내, 월 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에 임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어떤 경우에 입소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5.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 ①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부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기 개입 사례

1)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내담자1 : 어제도 아빠가 일 마치고, 들어와서 눈이 뒤집혀선 소주병도 밖에 내던지고...
자살겠다고 칼 옆에 두고 우리보고 나가 있어라고 했어요.

상담자1 : 저런. 아빠가 위협적으로 행동해서 많이 무서웠겠어요. 가족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있었나요? (**폭력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왔나?**)

내담자2 : 네. 어제 가족 모두 모텔에 피신해있었어요...

상담자2 : 잘 했어요.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를 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피해있어야 해요. (**안전 확보 당부**)

내담자3 : 쌤. 전 뒤돌면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잇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모텔에서 아빠가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가 많이 난다고 문자를 하면서, 아빠가 병원에 가야할거 같다 해서 밤에 저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담자3 :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의 문자를 받고, 또 아빠가 걱정이 되었군요.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내담자4 : 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빠 멀쩡하더군요.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티비도 보고 웃고 하다 보니 어제일은 다 잊었어요.

상담자4 : 우리 00님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정서적 지지**)

내담자5 : 저녁이 되면 아빠의 모습에 또 겁나고 화나서 전 울며 숨어만 있겠죠. 엄마는 상담 받아 봤자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고,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고. 가정폭력으로 아빠를 신고하자고도 해봤는데 엄마 그럴 의사는 없는 거 같고..

상담자5 : 아빠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도 또 딱히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서적 지지**) 쌤은 00님의 심리상태가 많이 염려가 되네요. 아빠는 어떨 때 주로 그런 행동을 보이시지요?

내담자6 : 아빠가 일마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 그때 아빠의 발걸음이 달라요. 집 밖에서부터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시거든요. 고함을 지르면서.

상담자6 : 아빠가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폭력을 언제부터 당해왔는지?**)

내담자7 : 3년 전 아빠의 사업이 실패하면서부터 엄마와 갈등이 시작됐고, 그 후로는 술만 마시면, 낮과 밤이 다른 아빠가 되요.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고,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늘 긴장되요.

상담자7 : 아빠가 시한폭탄 같을 것 같네요.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고. (**정서적 지지**)

내담자8 : 맞아요. 아빠가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했어요. 또 아빠의

동생들은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평소에는 기분 절제가 되는 듯 하다가도 한 번 미치면 앞뒤 안보고 일을 벌이세요.

상담자8 : 저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내담자9 : 작년에 말대꾸를 한다고, 아빠한테 차여서, 일주일은 절뚝거리며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아빤 이성을 잃으면 어떤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상담자9: 저런..아빠가 한번 이성을 잃으면, 어떤 행동을 할까 싶어 늘 두려움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있게 채팅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준 00님은 참 지혜운 것 같아요. 00님과 00님의 가족들이 상담을 좀 받았으면 해요. 아버지를 꼭 신고하라는 의미보다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서 도와주어 00님의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 및 가족 상담권유)**

내담자10: 저도 가족들이 상담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괜히 제가 여기저기서 다 말하고 다닌다고..

상담자10: 그 걱정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절대 모든 일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하기에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 후 동의를 얻고 혜정님과 어머니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차례요. 만약 00님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선생님이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내담자11: 제가 일단 먼저 엄마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상담자11: 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채팅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내담자12: 사실 저희보다도 아빠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ㅏㅏ

상담자12: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아빠가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족들을 어떤 형태로든 괴롭히지 않게 되시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빠를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00님과 00님 어머니께서 먼저 상담을 받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해요. 지금 00님이나 00님 어머니께서 해결하기에 힘이 드는 부분을, 해결방안을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2) 전화상담 사례

○ 호소문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세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살수가 없어요. 집이 싫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요.

○ 개입내용

- ① 내담자가 느꼈을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고 지지해 준다.
- ②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을 한다.
- ③ 다른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한다.
- ④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한다.
- ⑤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병원기록, 사진)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⑥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신고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한다.
- ⑦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준다.
- ⑧ 지속적인 상담을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5.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정보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호 및 지원 내용 :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 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의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명,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여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성 학대(아동복지법 제2호),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6호)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 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4) 방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4호)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 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을 말한다.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 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입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 참고문헌

- 가정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2004)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52>)

IV. 자살

1. 위기수준 판단 기준

위기수준	개입 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자살계획 - 자살 수단에 접근가능 - 분명한 정신장애 - 분명한 알콜,약물상태 - 급박한 위기가 있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후 안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24시간 사후관리 - 내담자의 정확한 정보 수집 (주소, 전화번호, 현 위치) - 긴급구조 및 출동하기 - 자살의 치명적 수단을 제거, 접근 제한하기 - 정서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 부모 및 보호자에게 연락취하기 - 안정이 된 후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문제, 위기에방 전략들에 대한 전체적 평가 실시
중위험 (임박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대한 지속적 생각 - 구체적 자살 계획 없음 - 정신장애에 대한 약간의 증거 -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 - 자주 있지 않는 위험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고통 완화시키기 - 내담자의 정확한 정보 수집 (주소, 전화번호, 현위치) - 안정이 된 후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문제, 위기에방 전략들에 대한 전체적 평가 실시 - 부모에게 연락하기 - 상담 연결하기
저위험 (위기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대한 일시적 생각 - 자살 계획 없음 - 정신장애 없음 - 알콜, 약물남용 없음 - 안정적인 심리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위험과 관련된 사후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 - 현재 정서적 고통 완화시키기 - 향후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곳 알려주기

2.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 확인

구분	위험 신호	직접적인 단서
행동적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에 심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 자살목적으로 약을 모아서 감추어 둠 - 줄, 칼 등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감춤 - 의미 있는 개인소장품이나 수집품들을 남에게 주거나 태우거나 버림 - 죽음이나 자살사이트에 심취 - 주위사람에게 자살이나 죽음에 관련한 말을 흘림
언어적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정말 죽고 싶어’ - ‘나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 ‘나에게는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 ‘다음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 ‘내가 사라진다면...’
상징적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변화나 행동변화 - 평소와 다른 식사와 수면 상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환상적, 공상적 내용의 소설, 만화, 영상물에 심취 - 실연이나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대중음악에 심취 - 자살을 모험적, 로맨틱하게 생각 - 칭찬이나 포상을 거부하는 행동 - 수집된 상장들을 태우거나 버림 - 성격의 심한 변화를 보임 - 외모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에너지가 떨어져 처져 있음

3. 위기 유형별 세부 대처방법

1) 기본 정보 질문하기

- ① 내담자의 인적사항(나이, 연락처, 거주지) 확인
- ② 자살 생각은 언제부터 해왔나요?
- ③ 자살 충동은 어떤 때 많이 느끼는지?
- ④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 ⑤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건이 있었나요?
- 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⑦ 지금 현재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2) 긴급 출동이 필요할 경우 추가 파악해야 할 질문

- ① 현재 자살을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 ② 지금 있는 곳의 위치는? 앞으로의 계획은?
- ③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3) 전화상담 및 채팅 중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나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음성 또는 메시지를 남기고 위치 추적을 시도(119협조),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잠시 전 상담한 상담선생님입니다. 많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도 반드시 해결방법은 있어요. 해결책은 반드시 있으니 저희 상담센터하고 그 방법을 같이 찾아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상담에 응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상담센터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담을 받고 적절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힘내세요.”

4) 보호요인에 대한 질문

- ①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나요?
- ② 당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 ③ 지금 당장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나요?

- ④ 지금처럼 어려울 때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에게 이야기 했나요?
- ⑥ 당신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⑦ 당신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 ⑧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⑨ 자살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⑩ (기타) 직장, 애완동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을 확인

○ 자살과 관련된 위기분류 및 기관연계 Tip

- 어떤 내용이든 자살의 행동적인 부분(예-뛰어내리겠다, 약을 먹는다 등)이 있으면 자살로 분류한다.
- 자살에 대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행동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 긴급구조 기관 연계

- ① 관련기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9소방구급대, 112(경찰), 122(해양경찰)
- ② 자살시도 의뢰 시 119 소방 구급대 및 112, 122로 연락하여 먼저 출동을 요청 후 대상자 가족 및 대상자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출동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도움 가능한 병원 등을 확인한다.

4. 위기 개입 사례

1) 사이버상담 개입 사례-채팅상담

○ 내담자 기본 정보

- 고1, 여학생
- 성적은 상위권, 친구관계 좋은편

○ 호소문제

- 이번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평균 10점이 내려갔고, 그로인해 아버지에게 많은 체벌을 받은 상황. 계속적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려왔으며, 자살계획을 하고 행동화하려는 상황임.

○ 개입 내용

내담자1 :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ㅠㅠ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아빠가 나는 죽어버리라고 했어요.ㅠㅠ

상담자1 : 성적이 많이 떨어진거예요? 많이 힘들고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00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 그런 심한 말을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내담자2 : 맞아요.ㅠㅠ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나도 편하고 아버지가 편하실 거예요.

상담자2 : 아버님이 정말 00님이 죽으면 편안하실까요? 전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평생 괴로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것 같은데 아버님이 어떻게 편하시겠어요?

내담자3 : 그럴까요? 아버지는 제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 시험때마다 성적보시고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쓸모없다고 하시고... 제가 죽으면 편안해지겠죠?

상담자3 : 그 정도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내담자4 : 저는 지금 커터칼을 2개 준비해 두었어요. 욕실에 물을 받아 놓고 손목을 그으면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많은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에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칼이 잘 안들 수 있다고 해서 2개를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목을 매려고 했는데 밧줄이 풀려 버렸어요. 잠깐이었는데도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 방법은 싫어요.

(자살 시도 경험 있음, 자살 계획 있음, 자살 수단 접근 가능성 높음)

상담자4 : 00님. 여러 가지를 알아보네요. 그렇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었을 텐데요.

내담자5 : 중학교 올라와서 부터요. 계속 공부만 해야 하고, 사는게 재미가 없더라구요. 성적이 오르면 그나마 낫지만 성적이 내리면.....올라도 불안했어요. 다음번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중 략-----

상담자5 : 지금 괴롭고 힘들겠지만 제가 옆에 있어요. 00님 혼자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요.

(정서 지지하기)

내담자6 : 선생님이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상담자6 : 그래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내담자7 : 감사해요

상담자7 : 우선, 옆에 있는 커터칼부터 버려요. 지금. 창으로 가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칼을 버리고 와요. **(자살 수단 제거하기)**

내담자8 : 그럴게요. 버리고 왔어요.

상담자8 : 잘 했어요. 너무 잘 했어요.

내담자9 : 휴! 마음이 좀 편안해요.

상담자9 : 00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쌤이 전화로 연락할게요.

(내담자 안전확인을 위한 연락처, 위치 확인)

내담자10 : 네. 좋아요. 000-0000-0000 이에요.

상담자10 :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해요. 제가 000-0000-0000번으로 전화를 할꺼예요. 전화 받아주세요.

내담자11 : 네. 감사해요.

※ 추후개입

- 전화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어려움 공감, 정서 안정시키기
- 부모에게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 향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하기

2) 전화상담 개입 사례

내담자3 : 네. 할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담자4 :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 했나 봐요.

내담자4 : 내가 너무 한심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상담자5 :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담자5 : 작년에 자퇴해서 지금은 집에서 공부해요. 근데 생각만큼 공부도 안 되고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 밤에 늦게 까지 인터넷 하다가 결국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하루가 가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지금쯤 입시준비 열나게 하고 있을 텐데 내 인생은 이미 다 망친 거다 싶고...

상담자6 : 자퇴한 이후부터 공부도 잘 안되고 해놓은 것도 없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그랬나봐요. 인생 다 망쳤다는 느낌까지 들고 말이에요... 혹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자살 생각 탐색)**

내담자6 : 그런 생각은 매일 하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비참하고... 난 죽어야 돼. 할머니도 나가 죽으라고 하고...

상담자7 :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살 생각 탐색)**

내담자7 : 그럼요. 중 1때 엄마가 집 나간 뒤로, 아니 그 전부터도 그런 생각은 늘 머리 속에 있었어요.

상담자8 : 최근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들었어요 **(자살 생각의 빈도 탐색)**.

내담자8 : 뭐 거의 매일이요. 점심때쯤 눈 뜨면 아... 끔찍한 하루를 또 버텨야 하나... 죽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상담자9 : 혹시 실제로 자살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살 시도 탐색)**.

내담자9 : ...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지난 달에 칼로 손목을 찔렀어요. 피도 꽤 났는데 안 죽더라고요. 나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나... 더 한심해 보이고...

상담자10 : 상처는 괜찮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내담자10 :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붕대로 감고 있는데 할머니도 모르고...

상담자11 :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오히려 한심하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다시 자살을 시도할 계획을 했었나요 **(자살 계획 탐색)**.

내담자11 :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영화에서 보면 손목을 긋고 잘도 죽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더 확실한 방법이 뭘까 고민 하다가 제일 확실한 것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동네에 있는 높은 건물을 찾아 다니다가... 찾았어요. 옥상이 안 잠겨 있는 건물. 여기면 되겠다. 두 세번 가봤어요. 갔다가 용기가 없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상담자12 : 혹시 지금 당장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담자12 : 지금요

상담자13 : 그래요. 진경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척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고 지금도 위태위태한 상태인 것 같아서요.

내담자13 : 뭐 지금 죽겠다 그런 거는 아닌데...

상담자14 :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여기에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요. 잘 했어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후 관리를 계획함)**

3) 개인상담 개입 사례

○ 내담자 정보

16세(남), 고1

○ 호소문제

- 내담자 부 : 내담자가 농담식으로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물어보면 농담이라고 반응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이 투신한 뉴스를 보면서 부럽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음.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 중
- 내담자 : 방송부 PD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 들어갔으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의견충돌이 생겨서 선배들이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탈퇴통보해 옴. 이 후 반 아이들과 어울려 보려해도 잘 되지 않아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됨.

○ 개입 내용

- 상담목표 : 내담자가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삶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찾아 무엇인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전략
 - 1) 자살위기정도 파악 : 객관적 도구를 통한 평가
 - 자살위기를 경험하는 보고 장면에서 내담자의 심정을 충분히 다루어 줌, 약물치료 중인 정확한 진단명 확인(의사 소견서)
 - 2) 주1회 상담, 전화연락을 통해 내담자의 안전상황 체크
 - 3) 자살관련 정서 및 행동의 내용과 정도 파악
 - 4) 내담자가 자살수단에 접근하지 않도록 차단방법 마련
 - 5) 내담자의 진로탐색을 위해 흥미검사, 직업체험 등의 활동 제공
 - 6)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습 및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5. 상담자가 알아야 할 정보

-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아동·청소년상담자윤리강령]에서 살펴본 위기상황 대처법과 비밀보호 한계

제2장 전문가로서의 태도

제6조(위기상황에의 대처)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해, 자살, 폭행, 살인 등 자신 및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또는 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자는 내담자의 보호자에게 해당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담자는 내담자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연락망(상담자, 보호자, 1388등)을 구축해야 한다.
3. 긴급 지원이 필요한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는 유관기관 전문가(경찰서, 시도센터의 긴급지원팀 등)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4. 상담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일 경우, 다른 상담자 또는 윤리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범죄(강간, 성폭행 등)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상담자는 내담자의 아동학대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6장 정보의 보호

제17조(비밀보호의 한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1. 내담자 및 타인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2) 자살관련 법률정보

- ‘자살’과 관련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자살’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 현행 법령 검색

✿ 참고문헌

- 한국자살예방협회.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3 STEP GUIDE ‘자살, 함께하면예방할 수 있어요!’ 리플릿
- 국가청소년위원회, 다솔심리상담센터(2007). 자살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위기개입 매뉴얼.
-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201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매뉴얼.
-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청소년자살 예방프로그램 및 개입방안 개발. 2008 청소년 상담연구, 141
-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자살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이버상담 매뉴얼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2011 상담사례 연구집 p99~123.

V. 성문제(성폭력, 임신)

2012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의 위기상담중 약 9%가 임신 등 ‘성’과 관련된 위기상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폭력과 임신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폭력

가. 위기수준 판단기준

성폭력의 위기수준은 ‘고위험’만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는 위기분류상 바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분	개입 기준	개입내용
고위험 (발생된 위기)	현재 또는 최근 성폭력 경험한 경우 또는 성폭력에 대한 협박등 행동화될 수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기 - 내담자에게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임을 설득하여 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 보호자에게 알리기 - 필요시 출동연계하기(119나 112)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one-stop센터 연계하기 - 사후관리하기(연계여부 확인) • 만 18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출동연계하기(119나 112)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one-stop센터 연계하기 - 신고절차 안내하기 - 사후관리하기(연계여부 확인)

나.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성폭력 one-stop센터로의 연계 가능성

-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한 곳에서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수사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 병원과 연계되어 있고, 여자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많다.

2)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 대처 요령

- ①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② 병원치료와 증거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
 - 피해 후 샤워나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세탁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증거물을 채취 한다.
 - 기타 신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폭력 피해를 동반할 경우 사진 등을 찍어서 보관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한다.

3) 성폭력 상담 위기개입 시 질문

- ① 성폭력상황에서 항거하지 못한 이유?
 - ② 6하 원칙 질문을 한다(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 ③ 19세미만의 경우는 위계와 위력이 있었는지 확인 한다.
 - ④ 폭행, 협박(현저히 때린 행위)이 있었는지 확인 한다.
 - ⑤ 상담하게 된 경위 파악한다.
 - ⑥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내담자를 설득하여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 ⑦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⑧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점 자세히 물어본다.
 - ⑨ 피해당한 이후의 행동에 대한 탐색한다.
 - ⑩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 파악한다.
 - ⑪ 가해자의 나이/수법 파악한다.
- ※ 위의 질문을 할 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취조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내담자를 공감하는 자세로 위의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성폭력 위기개입 사례

○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상담자1 : 그 오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해자의 나이/수법 파악)

내담자1 : 나이는 18살이고, 저와 같은 학원에 다닌 것 하고, 전화번호요.

상담자2 : 전화번호는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내담자2 : 아뇨/ 그건 좀... 죄송해요.

상담자3 : 알겠어요. 혹시 그 오빠가 성관계를 했을 때 때리려고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했는지요? (폭행, 협박 확인)

내담자3 :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 입을 막았어요.

상담자4 : 입을 막았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입을 막았군요.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00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담자4 : 막 도망칠려고 했는데 힘도 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리라도 지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때 입을 막은 거예요.

상담자5 : 00님은 너무 무서웠을 텐데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셨군요.

내담자5 : 네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꿈도 이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아 발버둥을 쳤어요.

상담자6 : 그랬군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한 거네요. 상황을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걸 분명한 성폭행이에요. 00님은 저항을 했었고, 그런데도 억지로 그런 일을 당하신 거네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상담실에 들어주셨네요. 참 잘 오셨어요. 이 상담센터로 들어온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상담을 하게 된 경위파악)

내담자6 : 어제 청소년임신에 대한 내용으로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상담자7 : 그래요. 임신이 될까봐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겠어요. 임신이외의 다른 부분은 괜찮나요? 지금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파악하기)

내담자7 : 몸도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임신만 안된다면요.

상담자8 : 지금 다른 곳은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지금은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빨리 잊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00님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원스톱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선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도 점검 해 줄 것이고, 신고를 원하면 신고도 도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모르시나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

겠어요? (부모님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모님에게 알리기 두려워 할 경우 심층적인 탐색을 하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모님께 알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담자8 : 싫어요. 절대 안돼요.

상담자9 : 그런데 엄마가 아시면 어떤 게 걱정이 돼요?

(두려움을 파악하여 설득)

내담자9 : 엄마가 알면 절대로 안돼요. 제가 요리사 되는 것 되게 반대하셔서 겨우 허락 받았는데 학원에서 알게 된 오빠랑 이런 일 생긴 걸 알면 엄마가 다시는 요리사 못되게 하실거예요.

상담자10 :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음에 알게 되면, 00님의 그런 마음보다 엄마로서 00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더 많이 미안하고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내담자10 : 그럴까요?

상담자11 : 그럼요. 부모님으로서는 그게 더 아프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00님은 미성녀자이고 강제 성폭행을 당한 것이잖아요. 저희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00님 잘못이 아니예요.

내담자11 :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담자12 : 그래요. 그런 마음 잘 알아요. 00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00님은 피해자예요. 몸도 마음도 검사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너무 힘들면 부모님께 제가 연락을 대신 해 드릴게요. (내담자의 두려움이 클 경우 전화를 대신해주어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야 한다).

내담자12 : 알겠어요. 부모님 전화번호는 123-4567-8910 이에요.

상담자13 : 알려주어 고마워요. 우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담자13 : 네. 알겠어요.

라.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정보

-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 75호 제 2항) : 신고전화번호 ; 1577-1392 / 112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의 아동학대를 직무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무
군은 아동학대(성폭력포함)를 발견했을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시행일 : 2013.6.19]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2012.2.1>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원래 형법 제305조는 13세미만의 부녀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3.6.19.부터는 13세미
만의 남자에게도 적용되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강간, 추행 등)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
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될 수 있다.

2. 임신

가. 위기수준 판단기준

임신의 위기수준은 ‘고위험’과 ‘중위험’위기로 나뉜다. 임신관련 문의나 걱정 등은 일반상담과 동일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 ‘행동계획’을 참조하여 개입수준을 나누어 보았다.

위기 구분	개입 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현재 또는 최근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 임신사실 여부 하기 · 부모에게 알리기 · 상담자로서 해줄 수 없는 것 명확히 알리기 → 병원비 지원, 병원에 같이 데려가 줄 수 없다는 것, 낙태관련 병원소개나 수술비 제공은 어렵다는 점 알리기 등 ※ 지역센터 마다 병원비 지원이나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여부 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센터의 지원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 성관계 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확인한다(성폭력에 해당될 경우, 성폭력 위기개입 지침과 동일). · 정서적 고통 완화시키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하기
중위험 (임박한 위기)	과거 성관계 경험(남친과 지속적인 성관계 맺고 있는데, 임신인지 아닌지 걱정된다는 등)으로 인한 위기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성관계 · 임신여부 확인(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확인해볼 것 권유 및 구입 및 사용할 수 있겠는지 확인) ·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안내함. · 사후 개입(임신인지 아닌지 확인) - 임신이 아닐 경우 · 성교육 및 올바른 피임방법 안내 · 반복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탐색하기 ·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 및 안전 확보 방법안내 - 임신일 경우 : 위기행동 개입과 동일

나. 개입 시 확인해야할 사항

1) 임신일 경우

① 임신사실여부 확인 및 성폭력 경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임신사실 확인 시 임신테스트기 사용방법 안내

- 마지막 관계일 이후 14일 이후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하다.
- 한 줄일 경우 음성이며, 두 줄일 경우 양성반응이므로 이럴 경우 산부인과에서 가서 건강상태 및 임신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 임신테스트기의 경우, 95%의 정확도를 가진다.

② 임신이 확실한 경우 부모개입이 원칙이다.

- 내담자들은 보통 부모님께 알려지길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
- 내담자 안전 확인 후, 내담자 욕구 탐색 및 내담자의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들어주기
- 내담자에게 상담자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한다.
: 병원안내, 병원을 함께 가는 것, 병원비를 대주는 것 등

③ 내담자가 부모개입 원치 않을 경우 : 상담자의 적극적 개입 필요

- 내담자 스스로 어떻게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한다.
- 상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예, 부모에게 내담자를 대신해서 알려주는 것, 내담자가 어떻게 말할지 연습하기 등)

④ 부모개입 시

-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파악 정보를 부모와 공유(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
- 이후 상담을 통해 부모, 내담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언제든 가능함을 알린다.
- 내담자가 이번일로 가족과 사회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한다.

⑤ 전화 및 사이버상담 시 지역센터 연계할 때

- 전화나 사이버상담으로도 충분히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내담자에게 지역상담센터 연계의 필요성이(예, 대면상담) 대두되었을 때,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와 연락하여 어떻게(시간, 장소 등)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내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

2) 성교육 시

- 임신 가능일(가임기간)은 생리가 시작한 날로부터 14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날을 기준으로 5일전부터 2일후까지이다. (그러나, 가임기간 외에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임기간을 고려한 피임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 질외사정은 피임방법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 사후피임약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할 수 있으며,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할수록 효과가 있다(산부인과 외에도 내과, 가정의학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 가능 여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 사전피임약의 경우, 정해진 시간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한 달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 콘돔으로 인한 성관계일 경우, 콘돔이 찢어지는 등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100% 안전한 피임방법은 없으므로, 성관계 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때 성관계를 맺어야 함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남녀심리 및 안전한 이성교제 방법에 대한 교육(밀폐된 공간 피하기, 스킨십이나 성관계 외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알리기 등)

다. 임신 위기개입 사례

○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상담자1 : 안녕하세요. 00님, 어떤 일로 이곳을 방문해주었나요?

내담자1 : 제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어요. 너무 어리석었던게.. 피임이란 아무런 준비없이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임신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ㅠ

상담자2 : 확실히 임신인지 확인은 해보았나요? (**임신여부 확인 질문**)

내담자2 : 다음 달 생리예정일이 지나도 생리를 안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약국 가서 테스트기를 샀는데 두 줄이 나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상담자3 : 그래요.. **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이란 결과가 생겨서 정말 더 그랬을 거 같아요..ㅠㅠ 혹시,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다고 했는데,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일인가요? 남자친구의 강제나 협박은 없었나요? (**성폭력 경험 사실 여부 확인**)

내담자3 :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원해서 한 것은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 같아요.. 저 이제 어떡하죠?

상담자4 :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볼 생각은 해보았나요? (**부모님께 알리는 것 권유**)

내담자4 : 부모님께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ㅠㅠ

상담자5 : 어떤 이유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가요? (**부모님께 알리는 것 두려워 할 경우, 알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함.**)

내담자5 : 지금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집안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저 까지 이러면..ㅠ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상담자6 : 그렇담, **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게 있나요? 임신했다면 점점 배도 불러오고, 아이를 어떻게 나올건지... 어떻게 기를건지를 정해야할 텐데..

내담자6 : 모르겠어요.. 저 근데, 중절수술은 꼭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상담자7 : 일단, 임신테스트기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95%이상 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중절수술의 경우, 현재법 상 낙태는 불법이고 성폭행에 의한 경우이거나 건강상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임신여부 확인 및 낙태에 대한 정보 안내**)

내담자7 : 그럼, 전 어찌죠?ㅠㅠ 부모님이 알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ㅠㅠ

상담자8 : **님이 부모님께 알리는 게 걱정이 된다면, 선생님이 부모님께 대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건 어때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많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님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거든요. (**상담자가 부모님께 알리는 대안 제시**)

내담자8 :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ㅠ

상담자9 : 일단, **님이 건강이 어떤지, 확실히 임신인지 병원에 가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님이 사는 지역의 상담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님 어느 지역에 사나요?

내담자9 : 네. 00 지역이요.

상담자10 : 00 지역에 00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곳에 **님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알아보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님의 개인적인 정보가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상담자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탐색 및 안내**)

내담자10 : 네..

라.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정보

1) 임신중절을 위해 상담자 동행을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제28조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이를 수행한 자는 모두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 따라 낙태죄로 처벌받게 된다.

-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직원이 동행하거나 연루된 경우 낙태죄의 방조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또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형사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4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2)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이 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로 제한된다(「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①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특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만일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3) 미성년의 자녀가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자녀의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모는 친권자이므로 자녀와 독립적인 고소권을 가지게 되므로 부모가 고소하면 된다.

나) 14세이상 19세미만의 자녀가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협박, 폭행, 위력, 위계, 성매매와 관련된 성관계라고 친권자인 부모가 의심한다면 친권자는 고소가 가능하다. 단, 경찰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시 자녀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진술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index.html>)
-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http://wesay.or.kr>)
- 스쿨맘 (<http://www.schoolmom.co.kr/>)
- 워드맘 (<http://withmom.mogef.go.kr/>)
- 꿈꾸는 드롭인센터 (<http://www.dream-girls.or.kr>)

VI. 가출

1. 위기수준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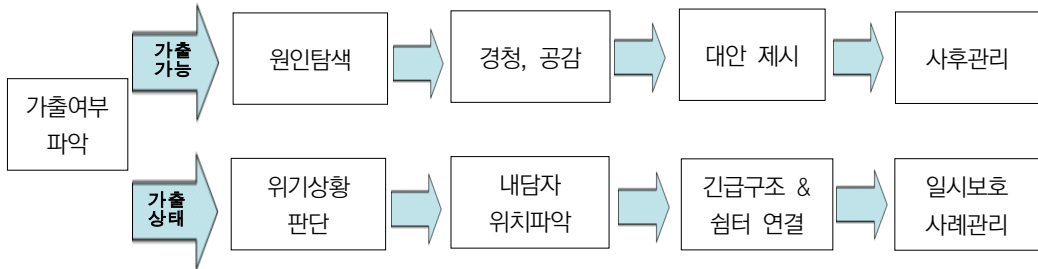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혹은 타의에 의하여 집을 나와 24시간 이상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귀가 지원, 보호시설 연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의 시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위험, 중위험 위기 등 2개의 위기로 구분한다.

위기구분	개입 기준	개입 방법
고위험 (발생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급박하게 제기되는 가출 문제(현재 가출상태 등)로 인해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 시도하기 - 첫 가출과 반복 가출 확인하기 -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안내하기(쉼터, 일시보호소 등) - 긴급출동 할 수 있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하기 - 상담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하기
중위험 (임박한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출가능성이 높은 내담자 - 최근 가출을 위해 준비를 완료하거나 이전 가출경험이 높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연락시도하기 - 정서적 위기 완화시키기 - 청소년의 상황이 가출할 정도로 심각한지 살펴보기(청소년의 위험상황을 점검하기) - 청소년이 가출후의 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기 - 상담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채팅상담 연계 및 1388청소년 전화 안내하기

2. 개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개입 절차

- 가출한 청소년이 직접 상담을 받을 경우



- 부모가 가출한 자녀를 찾는 경우



2) 가출한 청소년을 찾는 방법

- 직접 찾는 방법 : 일시보호소 및 지역내 가출 청소년쉼터로 전화하여 입소 여부 확인해본다.
- 휴대폰 위치추적 : 단순가출의 경우 위치추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부모 명이나 형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명의자가 이동통신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위치추적을 확인한다.
- 국번없이 182(경찰청)나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로 가출 신고 :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의해 발견될 경우 신원조회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Cys-net ‘이 사람을 찾습니다’ 메뉴에 찾는 아이의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특이사항 등을 올려 각 지역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한다.

3. 유형별 세부 대처방법

1) 가출의 횡수파악을 통한 개입

구분	내 용
첫 가출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귀가 가능성 여부확인 한다. - 부모와 연락을 어려워 할 경우 상담자가 전화통화 가능함을 전달한다. * 첫 가출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반복가출을 막을 수 있다.
가출이 반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가출경험과 가출 후 어디에 머물렀는지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머물수 있는 일시보호소 및 쉼터 안내한다. - 가출 문제 외에 약물 중독, 임신 등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야한다. - 가출로 인하여 보호관찰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배 중에 있거나, 학교에 장기적으로 무단결석을 하고 있어 제적의 위험이 있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2)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담자는 침착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임한다. ② 가출 충동의 원인 및 상황을 점검해 본다. (예 : 가출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③ 가출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가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출 이외의 다른 선택방법은 없을까요? - 가출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나요? ④ 대안을 실천해 볼 것을 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 후 다시 상담을 받도록(대면, 전화, 사이버) 안내한다. - 부모 또는 선생님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권유한다. -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에 내방 권유하기 등 ⑤ 사후관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 연락하여 가출 충동 상황이 잘 해결되었는지 알아본다. - 위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담자는 교사, 부모, 친구에게 연락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출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의 경우

-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용적인 태도로 임한다.
- ② 가출한 청소년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 목소리가 힘겹게 느껴지네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요?)
- ③ 가출 상황 전반에 대해 탐색한다.
 -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 집을 나오게된 이유가 있나요?
 - 몇 년째 가출한 상태인가요?
 - 나와 보니까 어떤 점이 힘든가요?
 -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나요?
 - 그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 용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 ④ 가출 청소년에게 절실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 ⑤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 긴급구조가 필요할 경우 : 인근 쉼터와 지역센터의 긴급구조 팀과 연계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혼자서 쉼터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적 지원이 어려움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
- ⑥ 긴급구조를 사양하고, 절대 싫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려준다.

4) 가출한 아이를 찾는 부모의 경우

- ① 부모의 걱정을 경청, 공감하고 먼저 부모를 안심시킨다.
 - 걱정이 많으시죠?
 - 저도 마음이 이런데 부모님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 가출한다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철들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조금은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대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요.
- ② 청소년을 찾기 위한 정보를 탐색한다.
 - 아이 인적사항(이름, 성별, 학년, 주소 등)이 어떻게 되나요?
 - 핸드폰은 가져 갔나요?
 - 가출 후 아이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 아이가 돈을 가져갔나요? 얼마나 가져갔나요?
- 아이가 가출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재가출인 경우), 지난번 가출 때 자녀를 어디서 찾았나요?
-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③ 부모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 탐색한다.

- 자녀의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해보셨나요?
- 자녀가 갈만한 곳이 어디며 직접 찾아가 보셨나요?
-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보셨나요?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는 하셨나요?
- 핸드폰 위치 추적은 해보셨나요?

④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
- 자녀가 갈만한 곳을 직접 찾아다녀보기
- 자녀 통장 잔고 확인하여 일정금액의 용돈을 넣어두기
-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예금을 인출한 장소 확인하기
- 부드러운 목소리로 메시지에 남겨 놓기
-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등

5) 가출청소년 쉼터 연계 경우

① 청소년의 현재 위치, 성별 등을 파악하여 입소 가능한 쉼터를 알아본다.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쉼터로 찾아가면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됨을 알리고 쉼터를 알려준다.
- 만약 청소년이 차비가 없어 혼자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쉼터에 청소년의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본다.

② 쉼터입소 시 쉼터에서 청소년의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준다.

③ 쉼터 내에서는 상담이 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려준다.

4. 위기 개입 사례

○ 사이버상담 사례-채팅상담

내담자1 : 안녕하세요. 어제 가출 했구요. 있을 곳이 없어요. **(가출여부 파악- 가출상태)**

상담자1 : 네. 내담자님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담자 위치 파악)**

내담자2 : 잠시동안 친구집에 있기로 했어요. 친구부모님이 내일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하 셧어요

상담자2 :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있을수 없으니 있을 곳을 찾아보아야겠네요. 그런데 내담자님은 이번이 첫 가출인가요? **(가출 횟수 파악)**

내담자3 : 아니요 두 번째예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돌아가고 싶지는 않네요.

상담자3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출 원인 탐색)**

내담자4 : 그냥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고 나의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엄마의 강압 과 감시가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자유롭게 싶은데... 생활이 쉽지 않네요.

상담자4 : 그래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담자님이 이제는 자유롭게 싶은 생각과 마음에서 가출을 다시 하게 되었군요. 그럼 예전에는 첫 가출은 언제였고, 어디에 있었나 요 그리고 얼마동안 가출을 했었나요? **(공감 및 첫 가출 경험의 구체적 탐색)**

내담자5 : 음. 작년 여름에 2틀동안 그때는 OO쉼터에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가 쉼터를 알려주어 가보았는데, 쉼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어쩔수 없이 돌아가 게 되었어요.

상담자5 : 그래요 쉼터는 바로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내담자의 힘든 마음을 부모님에게 전달을 해본적은 있나요?

내담자6 : 계속 얘기를 해도 저의 의견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담자6 : 그랬군요. 의견을 얘기 해는데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질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할거라는 생 각도 들어요. 이럴땐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할수 있을지 전문 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담자님이 가출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담자7 : 저는 지금은 부모님과 전혀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와 크게 다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지 않아요.

상담자7 : 그럼 지금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담자8 : 집에는 안들어가는 거죠.

상담자8 : 가출하고 나서는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가출 후 경험 탐색)**

내담자9 : 가출하고나니 사실 눈치가 많이 보여요 어디 있을곳도 없고 그래서 쉼터로 갈 수도 없고 집으론 돌아가고 싶지도 않구요.다른 곳은 없나요? 가출친구들끼리 모으는 사이트도 있던데.

상담자9 :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내담자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내담자가 나쁜 환경 속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내담자님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기에 쉼터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위험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쉼터 연계 확인)**

내담자10 : 그럼 예전에 있었던 oo쉼터로 가고 싶어요

상담자10 : 쉼터에 있을 때 알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가요? **(이전 쉼터 경험 확인)**

내담자11 :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상담자11 : 그래요 그 쉼터로 연락을 해서 내담자의 상황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있을 동안 부모님과 앞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를 상담 받거나 내담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면 쉼터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다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쉼터 연계 및 상담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귀가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유)**

내담자12 : 010-****-****예요. 네 그럼 선생님 전화해주세요

5.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정보

1) 가출청소년 이동전화 위치 추적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위기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
- 배주미외 8인(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가출’. 한국청소년상담원.